

49.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22년 9월 2일
- 제출자 : 대구광역시장
- 회부일자 : 2022년 9월 6일
- 상정일자 : 제295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

제1차 경제환경위원회(2022년 9월 19일),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이승대 혁신성장실장)

- 제안이유
 -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지침('22. 7월)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위원회의 기능을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개정하고자 함
- 주요내용
 -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위원회 설치를 강행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고, 그 기능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. (안 제16조제1항 및 제2항)

-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위원회 회의를 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’ 개최하도록 변경함. (안 제18조)
- 존속 기한이 만료된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. (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)
-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

3. 검토보고 요지(보고자 : 전문위원 김제관)

□ 적법성 여부

-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온 위원회를 정비하고 존속 기한이 만료된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기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□ 주요 검토사항

○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

- 안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위원회³³⁾(이하 “솔라시티 위원회”라 한다)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강행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고, 그 기능을 「대구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」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(이하 “탄소중립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. 본 조례는 상위 법령이 없어 조례 개정애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. 더불어, 대구광역시에서는 민선8기 구조혁신의 일환으로 책임회피성 위원회,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해 정비중*에 있으며, 솔라시티 위원회의 경우 회의 개최실적이 저조하고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이 탄소중립위원회와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조례 개정을 통해 폐지하고자 함.

* 위원회 정비현황 : 전체 199개 위원회 중 51개 위원회는 폐지하고 10개 위원회는 중앙부서에 법령 개정 건의 중에 있음.

특히, 폐지되는 위원회(51개)는

- ① 회의개최 실적 저조(11개) ② 역할종료 및 기능약화(16개)
- ③ 자체계획으로 기능 대체(18개) ④ 목적·기능 유사(6개) 에 따른 것임.

- 안 제25조부터 제28조에서는 존속 기한이 만료된 솔라시티 기금의

33)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위원회 년도별 개최실적

년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
개최실적(회)	1	0	0	0

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.

솔라시티 기금은 「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」가 최초로 제정될 (대구광역시 조례 제3640호, 2004. 3. 30. 제정) 때부터 설치·운용할 수 있었으나 현재까지 기금을 조성하거나 운용한 사례가 없으며, 기금의 존속 기한은 일부개정(대구광역시 조례 제4280호, 2011. 10. 10. 일부개정)을 통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됨.

□ 검토결과

-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, 존속 기한이 만료된 솔라시티 기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애 별다른 이견은 없음.
- 다만, 솔라시티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탄소중립위원회가 대신하게 됨에 따라 업무추진 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, 솔라시티 기금과 같은 유명무실한 기금이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기금을 신규로 조성하고자 할 때 사전 검토를 강화하여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질의 요지	답변 요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솔라시티 기금의 조성금액은? ○ 안 제3조제13호에 보면 설치의무기관이란 무엇이며, 지역에너지계획은 잘 수립하고 있는가?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조례 제정 후 조성된 사례가 없음. ○ 설치의무기관이란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나 행정기관을 의미함. 지역에너지계획의 경우 5년마다 수립하고 있음.

5. 토론요지

- 해당 없음.

6. 수정안 요지

- 해당 없음.

7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(출석위원 전원찬성)

8. 소수의견 요지

- 해당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해당 없음.